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어기구·강유정·고민정

문금주 • 박희승 • 복기왕

소병훈 • 이개호 • 이원택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 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 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 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보장되 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시장개방, 인 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고시한 가격을 말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 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농산물의 매입ㆍ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

반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 앱을 기급되는 제도(신) 및 "논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 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 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 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 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 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 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 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 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심 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 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농산물의 매입·비축 및 폐 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관측 및 추계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 이상 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